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2021. . .	
연월일	(제 회)	

고령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고령군수 (건축허과과)
제출연월일	2021. . .

법무통계담당 심사필

고령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21. 09.

제 출 자 : 고 령 군 수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7379호, 2020. 6. 9.)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664호, 2021. 5. 4.)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군민의 권익보호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기간을 15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변경하고,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재심의 신청 기회 제공(안 제15조)
- 나. 옥외광고사업 등록자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 7)
- 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규정 개정 및 내용 수정

3. 개정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 기간 및 결과 :

라. 성별 영향평가 결과 :

마. 규제영향 분석 결과 :

고령군 조례 제 호

고령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군수가”를 “옥외광고 업무담당국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15일[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소위원회”라 한다)는 10일]”을 “20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1회에 한정하여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로 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7】

과태료 부과기준(제28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비고
<p>1. 법 제3조를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한 경우</p> <p>가. 입간판</p> <p>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p> <p>가) 연면적 1㎡ 미만</p> <p>- 0.5㎡ 미만</p> <p>- 0.5㎡ 이상 0.8㎡ 미만</p> <p>- 0.8㎡ 이상 1㎡ 미만</p> <p>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p> <p>- 1㎡ 이상 1.3㎡ 미만</p> <p>- 1.3㎡ 이상 1.6㎡ 미만</p> <p>- 1.6㎡ 이상 2㎡ 미만</p> <p>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p> <p>- 2㎡ 이상 2.3㎡ 미만</p> <p>- 2.3㎡ 이상 2.6㎡ 미만</p> <p>- 2.6㎡ 이상 3.0㎡ 미만</p> <p>라) 연면적 3㎡ 이상</p>	<p>법 제20조 제1항제1호</p>	<p>12만원</p> <p>17만원</p> <p>25만원</p> <p>35만원</p> <p>42만원</p> <p>58만원</p> <p>67만원</p> <p>92만원</p> <p>117만원</p> <p>13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 ㎡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p>	<p>8만원 이상 35만원 미만</p> <p>35만원 이상 65만원 미만</p> <p>65만원 이상 130만원 미만</p>

2) 그 밖의 지역·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5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 0.5㎡ 미만	7만원	
- 0.5㎡ 이상 0.8㎡ 미만	10만원	
- 0.8㎡ 이상 1㎡ 미만	13만원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15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1㎡ 이상 1.3㎡ 미만	17만원	
- 1.3㎡ 이상 1.6㎡ 미만	25만원	
- 1.6㎡ 이상 2㎡ 미만	42만원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5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 2㎡ 이상 2.3㎡ 미만	50만원	
- 2.3㎡ 이상 2.6㎡ 미만	58만원	
- 2.6㎡ 이상 3.0㎡ 미만	75만원	
라) 연면적 3㎡ 이상	8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8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나. 현수막		
1) 현수막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면적 3㎡ 미만		8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 1㎡ 미만	8만원	
- 1㎡ 이상 2㎡ 미만	12만원	
- 2㎡ 이상 3㎡ 미만	13만원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15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 3㎡ 이상 3.7㎡ 미만	17만원	
- 3.7㎡ 이상 4.4㎡ 이하	22만원	

- 4.5㎡ 이상 5㎡ 미만	25만원	
다) 면적 5㎡ 이상 10㎡ 미만		35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 5㎡ 이상 6.0㎡ 이하	35만원	
- 6.1㎡ 이상 8.0㎡ 이하	50만원	
- 8.1㎡ 이상 10.0㎡ 미만	58만원	
라) 면적 10㎡ 이상	80만원+면적 10㎡ 초과하는 면적의 1㎡ 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1)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경우	해당 과태료의 2배 까지 증가	
다. 벽보		장당 8천원 이상 5만원 이하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17천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22천원	
- 21장 이상	장당 33천원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17천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30천원	
- 21장 이상	장당 37천원	
라. 전단		장당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8천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13천원	
- 21장 이상		장당 17천원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17천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30천원	
- 21장 이상		장당 37천원	
2. 법 제10조의4에 따른 손해배상 책 임보	법 제20조제1		
험에 가입 하지 않은 경우	항제1의3		
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1만원에 1일째부터	
경우		계산하여 1일마다 3	(좌동)
		천원씩 더한 금액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10만원에 31일째부터	
이하인 경우		계산하여 1일마다 1	(좌동)
		만원을 더한 금액	
다.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70만원에 91일째부터	
경우		계산하여 1일마다 2	(좌동)
		만원을 더한 금액	
3.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	법 제20조		
지 않은 경우	제1항제2호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		50만원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		83만원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167만원	
라. 1년 이상		333만원	
4.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	법 제20조		
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제1항제5호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80만원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200만원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500만원	
5.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제2항		
가. 1회 위반한 경우		25만원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45만원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100만원	

비고: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5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생략)</p> <p>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u>부군수가</u>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p> <p>1.·2. (생략)</p> <p>③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 부터 <u>15일[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소위원회”라 한다)는 10일]</u>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u>1회에 한정하여 15일(소위원회는 10일)</u> 이내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④ ~ ⑧ (생략)</p>	<p>제15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옥외광고 업무담당 국장이</u> ----- ----- -----.</p> <p>1.·2. (현행과 같음)</p> <p>③ ----- ----- --- <u>20일</u> ----- ----- ----- ----- --- <u>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u> 제21조에 따라 ----- -----.</p> <p>④ ~ ⑧ (현행과 같음)</p>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령군 건축허가과	
연 락 처	(054) 950 - 6742